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2. 8. 19.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104호
----------	-------

제출연월일 : 2022. 8. 19.
제출자 : 논산시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함.
 - 센터에는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필요한 사무직원을 배치함.
- 나. 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시설,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지원함.
- 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안 제10조)
 -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현지 판촉행사 개최를 지원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참고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개선권고하여 이를 반영함

- 조례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및 성별 통계 생산해야 함을 명시하도록 개선권고하여 이를 반영함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7. 1. ~ 2022. 7. 21. (20일간)
 - 나) 결과: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며, 사업 참여자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제5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농산물 수출·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수출과 유통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과 유통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과 유통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
2. 수출 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상(輸入商)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해외연수
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문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marketing)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과 유통물류센터 설치
2.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과 유통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과 유통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수출·유통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과 유통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농업정책과장	김 용 남
	농산물유통팀장	백 석 현
	담 당 자	노 기 업 (746-6082)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 해외시장 개척지원: 안 제10조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소요비용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기준으로 2026년까지 산출

나. 추계결과

- 세출예산: 940,000천원(5년차 소요예산)
- 산출근거

- 2023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사 업 명 세 (통 계 목)
합 계	210,000	
인 건 비	110,000	<인건비> · 계약직공무원 2명 인건비: 110,000천원 (가급 1명: 64,000천원, 나급 1명: 46,000천원)
민 간 이 전	1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 해외시장 개척지원: 100,000천원

3.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김 용 남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세 출	1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인 건 비	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440,000
민간이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지방세	100,000	210,000	210,000	210,000	9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